

공직립후보자에 대한 형사법 위반행위의 보도는
언제나 공직에의 적합성 문제와 관련이 있으므로
뉴욕타임즈 사건 원칙의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한다.

Ocala Star – Banner Co. 등 v. Damron

플로리다주 상소법원 (제 1 지역)에 대한 사건이송 명령

<사실개요>

상소인인 신문사는 시장이자 군세액사정직의 입후보자이던 피상소인이 연방법원의 법정에서 증으로 기소당하였다는 허위 기사를 공표하였고, 피상소인은 이를 명예훼손으로 제소하였다. 판사는 배심에게 그 비난은 그 자체로 명예훼손성이 있고, 또한 피상소인은 악의의 입증없이도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고 설시하였다. 판사는 그 기사가 피상소인의 공적인 활동과 관계 없었다는 이유로 뉴욕 타임즈사 대 설리반사건(New York Times Co. v. Sullivan, 376 US. 254)의 「현실적 악의」 기준의 견지에서 새로운 심리를 해 달라는 신청을 기각하였다. 플로리다주 항소법원은 뉴욕 타임즈 사건 원칙은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판결을 유지하였다.

뉴욕 타임즈 사건의 「허위임을 알았거나 진실에 관한 부주위에 의한 무시」라는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공직자 또는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그들이 형사법위반행위를 하였다는 비난이 시간적 장소적으로 아무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언제나 그의 공직에의 적합성 문제와 관련이 있다. 모니터 패트리엇사 대 오가 사건(Monitor Patriot Co. v. Roy) 참조.(221 So. 24 459). 파기하여 환송. 스튜어트(Stewart) 판사가 법원의 견해를 피력하였고, 여기에는 버거(Burger) 대법원장, 하알란(Harlan), 브레난(Brennan), 화이트(White), 마샬(Marshall), 블랙 먼(Blackmun) 판사 등이 가담하였다. 화이트 판사가 판결에 동조하는 내용의 견해를 내놓았고, 블랙 (Black) 판사가 결론에 있어서는 동조하나 부분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놓았는데 여기에는 더글라스(Douglas) 판사가 가담하였다. 해롤드 월(Harold B. Wahl)이 상소인을 위하여 주장을 펴고 서면을 제출하였다. 월리스 던(Wallace Dunn)이 피상소인을 위한 주장을 펴고 서면을 제출하였다.

<판결요지>

스튜어트 판사가 법원의 견해를 발표하였다.

이 사건의 상소인인 오칼라 스타배너사(Ocala Star Banner Co.)는 플로리다주 지방 4 개의 군에 배포되는 소규모의 일간신문을 발행하고 있었다. 1966 년 4 월 18 일, 스타배너지는 그 당시 크리스탈시의 시장이었고 군세액사정직의 입후보자인 피상소인 레오나드 댄런(Leonard Damron)이 위증죄로 연방법원에 기소되어 있고, 그 재판은 동법원의 다음 재판기일까지 연기되어 있다고 하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이 기사는 허위였다. 피상소인은

연방법원에 아무런 죄로 기소되지도 않았고, 그와 관련된 아무런 재판도 연기된 일이 없었으며, 다만 그의 동생인 제임스 댄런(James Domron)에 대한 기사는 대체적으로 정확한 것이었다. 2주일 후 피상소인은 군세액사정직 선출을 위한 선거에서 패배하였다. 그는 플로리다주 매리온(Marion)군의 순회법원에 스타배너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기사는 그 자체로서 명예훼손적이고, 개인으로서, 공직자로서, 공직에의 입후보자로서, 사업가로서 그의 명예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보상적 손해배상으로써 5만 달러를,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으로써 50만 달러를 청구하였다. 심리과정에서 신문사는 그 기사가 피상소인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허위라는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았고, 그 잘못은 그 신문의 지역편집인들 중 한 사람의 「정신적 과오」에 의한 결과라고 설명하였다. 그 지역편집인은 그 신문사에 겨우 한달 남짓밖에 근무하지 아니하였다. 그는 증언하기를, 자신은 피상소인의 정치적 활동에 관한 몇 가지 기사를 다루었는데 그의 동생 제임스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들어본 일이 없었다는 것이다. 지역탐방기자가 그 이야기에서 주인공은 제임스 댄런이라고 정확하게 확인하여 주었을 때 그는 부주의하게도 그 이름을 바꾸어 버렸다. 피상소인은 이 설명에 의문을 던지기 위하여 증거를 제시하였다. 증거의 마감단계에서 피상소인은 배상책임의 문제에 관하여 지시평결의 신청을 하였고, 공판 재판관은 그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 사건은 다음과 같은 지시와 함께 손해의 문제에 관하여 배심에 회부되었다.

「법원은 배심에게 명예훼손이 저질러졌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지시하고, 법원에서 배심에게 준 다른 지시들과 일치하여 원고에게 유리한 결정이 날 것이라고 배심에게 지시하였다. 배심은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에 대하여 행해진 비난은 그 자체가 명예훼손적이고, 그것은 원고에게 손해가 있다는 추정을 가져다 주며, 다만 이 손해의 추정이 한쪽 편에 의하여 제시된 증거에 의하여 번복되고, 증거의 우세에 의하여 원고에게 통상적인 손해가 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을 때에는 배심이 원고에게 명목상 손해이상의 배상을 하도록 할 수 없다고 지시받았다. 법원은 배심에게 지시하기를 배심이 증거와 법원의 설시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손해의 전보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믿는다면 혹시 있다면 그가 가지거나 보상받을 수 있는 보상적 손해에 덧붙여서 배심은 하기와 같이 악의가 증명되거나 추정되는 때에는 원고에게 징벌적 손해의 전보를 받게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법원은 배심에게 중죄의 혐의를 원고에게 뒤집어 씌울 때 악의는 추단된다고 지시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만약 배심이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아무런 죄도 저지르지 아니한 원고에게 위증죄의 비난을 한 것이라고 정당하게 인정한다면, 배심은 그 비난이 악의적으로 행해졌다는 것과 원고를 위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하는 평결을 보증하기 위하여는 아무런 명시적인 범의 또는 악의를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추단할 수 있다.」

배심은 댄런에게 2만 2천 달러의 보상적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였으나 징벌적 손해의 배상을 받도록 하지는 않았다.

스타배너지는 새로운 심리를 신청하면서 그 사건이 뉴욕타임즈 사건(New York Times Co. v. Sullivan, 376 U.S. 254)에 있어서 당원에 의하여 확립된 「현실적 악의」 기준 하에서 배심에

회부되었어야 한다고 다투었다. 공판 재판관은 그 신청을 기각하였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직장이나 직위의 공적 활동에 있어서 공직자로나 공적인 인물들과 관련있는 뉴욕타임즈 사건과 그 이후의 사건들은 그 자체로서 명예훼손적이며 원고에 의하여 행해지거나 추구된 관공서들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는 피고들이 신문발행에 근거를 두고 있는 위 사건 소송의 원인에는 적절한 것이 못된다」는 것이었다. 플로리다주 지역 항소법원은 그 판결을 확인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이 사건의 원인이 된 명예훼손적인 발행에 대한 심리로 원고가 직무로서 행한 그의 공적인 활동이나 태도는 이 사건에서 문제된 부정확함에 대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유로 그것은 뉴욕타임즈 사건에 있어서 공표된 원칙에 의하여 주어진 보호범위 내에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공판재판관이 원고가 악의를 입증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다.」

플로리다주 대법원은 그 재판을 재심하기를 거절하였고, 당원은 제시된 연방헌법상의 문제를 고려하기 위하여 사건이송명령을 발한다.

크리스탈 리버시의 시장으로서 피상소인인 레오나드 댄런은 뉴욕타임즈사 대 설리반 사건에 있어서 주어진 의미내에서 보자면 의문의 여지없이 공직자이다. 따라서 그는 명백하게 그 기사가 현실적 악의, 즉 그 기사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 또는 허위 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부주의에 의한 무시로서 공표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않는 한 공직자가 그의 공적활동과 관련된 명예훼손적인 허위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원칙의 적용을 받게 된다. 군세액사정직에 대한 입후보자로서의 신분에 있어서도 그는 같은 원칙의 적용을 받는다 (Monitor Patriot Co. v. Roy 사건 참조).

그러나 뉴욕타임즈 원칙은 이 사건의 심리에서는 적용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다.

공판재판관은 스스로 공표와 허위의 문제를 신문사 측에 불리하게 결정하였다. 그리고 그는 배심에게 그 기사가 그 자체에 있어 명예훼손적이기 때문에 오직 문제되는 것은 손해액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지시하였다. 신문사 측이 기사가 허위인 사실을 알았거나 그 기사의 진위여부에 관하여 부주의에 의한 무시로 이를 공표하였다는 증거없이 피상소인이 손해를 배상받도록 허용되었기 때문에 그 판결은 파기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뉴욕타임즈 사건의 원칙은 본건과 같은 특별한 명예훼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어떤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다. (Henry v. Collins 380 U.S. 356, Curtis Publishing Co. v. Butts, 388U. S., 130,142-143-하알란 판사의 의견-, Greenbelt Cooperative Publishing Assn. v. Bresler, 398U. S. 6 참조).

피상소인은 우리에게 그 사건의 원칙은 오직 공적 활동에 적용될 뿐이고 합중국 공민권에 관한 소송에서 증언하는 동안 저질러진 위증으로 기소되었다는 비난은 순수하게 「사적인」 명예훼손이기 때문에 뉴욕타임즈 사건과 구별되는 근거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앞에 언급된 모니터 패트리엇사 대 로이 사건(Monitor Patriot Co. v. Roy)에 있어서 당원이 오늘날 내린 결론에 의하여 해결된다. 그 사건에서 우리는 공직자 또는 그 후보자에 대한 형사법 위반행위가 있다는 비난은 악의 또는 진실에 대한 부주의에 의한 무시라는 뉴욕타임즈 사건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아무리 시간적 장소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언제나 그의 공직에의 적합성과 관련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선거로 선출하는

공직에 입후보한 사람의 자격들에 관한 대중의 토론은 무엇이 뉴욕타임즈 사건의 원칙을 적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것인가를 제시하여 주었다. 그리고 어떠한 검토를 하더라도 우리는 지방시장과 군의 선거직에의 입후보자가 공민권소송에서 위증죄로 기소되었다는 비난은 그의 공직에의 적합성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사료한다(게리슨 대 루이지애나 사건(Garrison v. Louisiana, 379 U.S. 64, 77) 참조).

수정헌법 제 1 조와 제 14 조에 비추어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위 견해와 어긋나지 않도록 좀더 심리케 하기 위하여 환송한다.

이상과 같이 판결한다.(블랙 판사의 개별의견은 다른 사건에서 언급된 부분 참조)

화이트 판사는 결론은 같이하나 이유를 달리한다.

불가피하게도 문서에 의한 명예훼손(libel)이나 구두에 의한 명예훼손(slander)에 있어서 원고들에게 개별적인 경우에 있어 악의 또는 허위에 대한 부주의의 입증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인하여 뉴욕타임즈사 대 설리반 사건은 비록 악의나 부주의는 없었더라도 개인적 명예에 심한 손해를 입히는 거짓이나 허위 보도자에게 헌법적 보장을 늘려주는 결과가 되었다.

그러나 수정 헌법 제 1 조는 용감하지만 잘못 보도하거나 부주의한 보도에 대하여 공로훈장을 수여하는 것이라고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오보는 그 자체가 장점이 아니다.

단순히 오보만을 보호하는 것은 계획된 거짓보도와 마찬가지로 수정헌법 제 1 조의 목적과 상반된다 (게리슨 대 루이지애나 사건(Garrison v. Louisiana, 379 U.S. 64, 75, 1964 년)

참조). 오보의 본질은 시민들이나 공직자들에 의한 지적인 결정에 아무런 공헌을 하지 못한다. 그것은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고 다만 근거 없는 권리침해만 할 뿐이다.

허위보도를 하는 발행인들을 보호하려는 단하나의 이유는 그렇지 아니하면 진실이 너무나 자주 억압된다는 것이다. 악의없는 허위는 오직 진실에의 길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호된다는 것은 이전의 세인트 아멘트 대 톰슨 사건(St. Amant v. Thomson, 390 U. S. 727, 732, 1968 년)에서 언급되었고, 그 견해가 요사이 타임사 대 페이프 사건(Time Inc. v. Pape)에서 재확인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